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57
----------	-------

발의연월일 : 2026. 10. 19.

발 의 자 : 김위상 · 김종양 · 이종배
이달희 · 박성훈 · 김기현
이진숙 · 김승수 · 신성범
김은혜 · 우재준 · 김성원
박충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계획 및 실시결과 중심의 기존 평가 체계에 고용 연계, 전문성 증진과 같은 평가결과 역시 중요하게 평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8조제 1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추가지원) 정부는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도록”을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이 이루어지도록”으로, “계획 및 실시결과를”을 “계획,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정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u>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도록</u>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민간 직업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체의 대표자 등에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u>계획 및 실시결과를</u> 보고하게 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11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u>추가지원</u>) 정부는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u>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 -----청 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이 이 루어지도록----- ----- ----- ----- -----계획,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등을-----.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② · ③ (생 략)	<u>령령으로 정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	------------------------------------